

##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

### 제6.1조 목적

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.

- 가. 양 당사국의 「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」의 이행 증진과 표준 및 적합성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(APEC)의 작업을 기반으로 한 무역의 증대 및 원활화
- 나. 기술규정,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
- 다. 가능한 경우, 양 당사국 간 무역과 관련한 비용 절감
- 라. 건강, 안전 그리고 환경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 협력의 촉진, 그리고
- 마. 양 당사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

### 제6.2조 정의

1. 이 장의 목적상,

지정은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, 점검, 지정 정지 또는 취소, 또는 정지 해제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적합성 평가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성 평가기관에 승인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.

2. 「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」의 부속서 1에 규정된 정의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.

### 제6.3조 적용범위

1.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,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.

2.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- 제13장(정부조달)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기관이 자신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규격을 적용하는 한도에서 그 기술규격, 또는
  - 제5장(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)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

#### 제6.4조 권리 및 의무

양 당사국은 「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」 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준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, 그 협정의 제2조부터 제9조까지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.

#### 제6.5조 국제표준

- 각 당사국은 「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」 제2.4조 및 제5.4조에 규정된 한도에서, 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표준, 지침 및 권고를 사용한다.
- 「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」 제2조와 제5조 및 부속서 3의 의미 내 국제표준,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,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 채택한 “협정 제2조,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,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” (G/TBT/1/Rev11의 제1부에 대한 부속서 2)과 그 이후 개정판에 규정된 원칙에 그 판정의 근거를 둔다.
- 양 당사국은 국제표준화 기구 내에서 개발된 국제표준이 무역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, 그들의 국제표준화 기구에의 참여의 맥락에서, 상호 관심 분야에서 각각 자국의 기관 간 협력을 장려한다.

#### 제6.6조 기술규정의 동등성

- 「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」에 합치되게,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, 이들 규정이 자국의 규정의

목적을 적절히 총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,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.

2.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한다.

3.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기술규정의 동등성을 달성하기 위한 약정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.

4.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다른 쪽 당사국의 그러한 약정 교섭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한다.

5. 양 당사국은, 적절한 경우,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와 같은 국제 포럼에서 기술 규정의 동등성 및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상호 의사소통 및 조정을 강화한다.

## 제6.7조 적합성 평가절차

1. 각 당사국은, 적합성에 대한 명확한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, 요구되는 절차는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지 아니하고, 「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」 제5.1조에서 규정된 대로 자국을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 또는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위한 접근을 보장한다.

2.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. 그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한다.

- 가. 서로의 영역의 인정기관 간 협력 약정의 인정을 촉진
- 나. 특정 기술규정에 대해서 서로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의 이행
- 다. 인정기관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 간 기존의 지역적, 국제적 그리고 다자간 인정 협정과 약정을 인정
- 라.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에 대한 인정
- 마.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에 대한 인정

바.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일방적 인정, 그리고

사.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수용

3.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용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환을 강화한다.

4. 한쪽 당사국은,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한다.

5. 양 당사국은 서로의 적합성평가 결과의 지속적인 신뢰성에 대한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, 적절한 경우,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 또는 인정된 적합성 평가기관의 기술적 능력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.

6. 제2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, 각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절차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쪽 당사국의 약정 교섭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.

7. 당사국이 제6항에 따른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, 요청에 따라, 그 이유를 설명한다.

## 제6.8조 공동협력

1. 양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.

가.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

나. 건강, 안전 및 환경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양 당사국의 규제 기관 간 협력 증진, 그리고

다. 각 당사국 시장에 대한 접근 촉진

2. 우수 규제 관행과 무역 촉진 사이의 중요한 관련성에 대하여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규제 사안에 대하여 협력하고,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가. 위험관리 원칙에 기초한 우수 규제 관행의 증진

나. 양 당사국의 기술 규정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 교환

다. 건강, 안전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의 관리 및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를 위한 공동 계획 개발

라. 더 나은 규제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이해 및 역량 구축, 그리고

마. 적절한 경우, 시장감시 정보의 교환

3.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특정한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무역원활화 계획을 확인하고, 개발하며, 적절한 경우,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가. 투명성

나. 국제표준과의 정합

다. 기술규정의 조화 또는 동등성

라.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, 그리고

마. 준수 사안에 대하여 도달한 이해

4. 제3항에 언급된 계획은 적절한 경우 비대칭적 접근방법의 사용을 포함할 수 있다.

5.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고려한다.

6. 양 당사국은 제6.10조제2항차호에 따라 설치된 작업반에 의하여, 개별 사안 별로, 작업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제1항부터 제5항을 이행한다.

## 제6.9조 투명성

1. 다른 쪽 당사국이 제안된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하여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하여, 「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」 제2.9조, 제2.10조, 제5.6조 또는 제5.7조에 따라 공고를 공표하거나 통보를 전달하는 한쪽 당사국은 그 제안의 목적과 취지 및 그 사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킨다.

2. 「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」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게 그 제안을 통보할 때, 이와 동시에,

- 가. 한국은 제1항에 언급된 통보를 「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」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뉴질랜드 문의처에 전자적으로 전달한다. 그리고
- 나. 뉴질랜드는 제1항에 언급된 통보를 제6.10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의 접촉선에 전자적으로 전달한다.
3. 각 당사국은 「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」 제2.9조 또는 제5.6조에 따라 통보를 전달한 후, 다른 쪽 당사국이 그 제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60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.
4. 상품이 제6.12조가 적용되는 부속서 또는 이행 약정의 적용대상이 되고 한쪽 당사국이 그 상품이 건강, 안전 또는 환경에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긴급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, 제6.10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접촉선을 통하여 그 조치와 그 조치를 부과한 이유를 즉시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.
5.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한쪽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하는 표준,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.

### 제6.10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 위원회는 직접 대면, 원격 회의, 화상 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.
2.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.
- 가. 이 장의 이행과 운영의 촉진 및 점검
- 나.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협력 증진
- 다.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, 채택,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보장
- 라. 적절한 경우, 양 당사국 영역에 소재한 정부 및 비정부 적합성 평가 기관 간의 협력을 포함하여, 규제 당국, 인정 기관 또는 적합성 평가 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모든 제안의 검토

- 마. 다른 쪽 당사국이 지정한 분야에서, 협정 교섭을 위한 요청을 포함하여,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한 검토
- 바. 표준, 기술 규정, 그리고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,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관한 정보 교환
- 사.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제19장(분쟁해결)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하고,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신속히 촉진
- 아. 「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」의 이행을 증진하고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을 원활화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고려하여 취하는 그 밖의 조치
- 자. 「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」상의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고, 그러한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 개발, 그리고
- 차. 이 장에 따른 특정 과제를 수행할 작업반 설치

3. 양 당사국은 제2항사호에 따른 기술적 논의의 대상이 되는 기술 규정, 표준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의 대표들이 그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.

4.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부터 1년 이내에,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때에 회합한다.

5. 위원회는 다음의 접촉선이 조정한다.

가. 한국의 경우,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
나. 뉴질랜드의 경우, 기업 혁신 및 고용부 또는 그 승계기관

6. 접촉선은 자신의 기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적절한 모든 합의된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다.

7. 양 당사국은 접촉선의 변경이나 관련 공무원의 세부 사항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신속히 서로에게 통보한다.

8. 접촉선은 이 장의 이행과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.

## 제6.11조 정보교환

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쇄된 형식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한다. 당사국은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한다.

## 제6.12조 부속서와 이행 약정

1.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에 적용가능한 기술 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합의된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는 부속서를 체결할 수 있다.
2. 양 당사국은 위원회를 통해 다음을 규정하는 이행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.
  - 가. 이 장의 부속서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, 그리고
  - 나. 제6.8조제6항에 따라 설치된 작업 프로그램 결과에 따른 약정
3. 부속서 및 이행 약정을 개발하는 경우,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하여 기존의 모든 양자적, 지역적 및 다자적 약정을 고려한다.
4. 이행 약정이 체결되었을 경우, 이는 양 당사국간 무역에 적용된다.
5. 양 당사국은 부속서 및 이행 약정의 지속적인 검토 및 개선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합의한다.
6.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 인정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고, 상호 인정 협정 또는 약정 개발의 실행 가능성을 논의한다.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어떠한 제안에 대하여도 적절히 고려한다.<sup>1</sup>

---

<sup>1</sup> 이와 관련하여, 한국의 관심분야는 통신장비, 전기 및 전자장비, 전자파적합성 및 의료기기를 포함한다. 이와 관련하여, 뉴질랜드의 관심분야는 주류를 포함한다.